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6-709호

집과 같은 환경의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2. ~ 2027. 6.(7개월)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 9인의 정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접수종료일 기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 불가
- 유니트별 8~12인의 정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노인요양시설
 - * 복수 유니트 운영 시에도 각 유니트 정원 범위(8~12인) 충족 시 운영 가능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나형) 및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해당 사업 정원을 제외한 잔여 정원에 한하여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신청 가능
(동일 정원에 대하여 유니트케어와 치매전담실, 유니트케어와 타 시범사업 중복 운영 불가)
- 전담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근무 전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필수

○ (공모규모) 00개* 유니트

* 지역 간 형평성 및 적정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여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 가능자

○ (운영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 (서비스내용) 1인실 설치 원칙*, 공용거실 의무화를 통한 입소자 교류 기회 마련으로 돌봄 품질 향상

* 부부·지인 등의 공동입소 희망 시 유니트별 2인실 2개까지 설치 허용

- (지원내용) 등급별 1일당 수가 + 프로그램 지원비 + 인센티브
 - ※ 프로그램 지원비,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은 현 시범사업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와 동일한 본인부담금 납부
 - ※ 1, 2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침실료(비급여)는 기관 자체 책정

2. 운영기준

아래 시설 기준은 '3차 시범사업 추가공모'에만 적용됨(추후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시 변동될 수 있음)

① (시설기준)

- (운영단위) '유니트(Unit)'를 기본단위로 운영

- 유니트(Unit)를 **단독**으로 운영(복수의 유니트 운영 가능)
- 동일 층 내 일반실과 유니트를 운영하는 경우 공간 분리 구획 필요(가벽 또는 문 설치)
- 동일 침실 내에 유니트케어 대상자와 비대상자 동시 입소 불가

- (정원) 유니트별 정원 9인 기준 운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9인 기준
- 노인요양시설: 정원 9인 기준이나, 기관 여건에 따라 8~12인의 정원 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단, **정원변경 시 공단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복수 유니트를 운영하는 경우: 각 유니트 정원 범위(8~12인) 충족 시 운영 가능

- (침실) 1인실 설치 원칙, 시설 내 개인 공간에 개인 가구·물품 등을 배치 하여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강화

- 침실:
 - (1인실) **최소면적 10.65㎡ 이상**,
 - (2인실) **최소면적 17.25㎡ 이상**
 - * 부부·지인 등의 공동입소 희망 시 유니트별 2인실 2개까지 설치 허용

※ 2인실 입소 조건: 동성 원칙하에 입소 가능(단, 부부의 경우 예외)

- (공동거실) 공동거실을 배치해 유니트 입소자 교류 유도

- 공동거실: 1인당 **최소 1.65㎡ 이상**
 - ※ 중정형인 □자 구조를 기본 권장하며, Γ·L·C·복도형 등의 구조인 경우에는 돌봄 인력이 공동거실에서 입소자의 침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배치 형태 권장

※ 공동거실 면적은 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활동 공간만 반영

- (화장실·욕실) 유니트당 화장실 1개, 욕실 1개 이상 설치 원칙이나, 화장실 내 목욕 설비*를 갖춘 경우 욕실로 겸용 인정

* 목욕설비: 욕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

• 화장실·욕실: 유니트당 1개 이상 의무 설치

※ 단, 화장실이 1개인 경우는 칸별로 분리된 좌변기 2개 이상 설치 필수

※ 단, 동일 층에 여러 유니트가 있는 경우 공동욕실을 유니트간 공동으로 사용 가능

- (옥외공간) 시설별 자율 설치

②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은 2.1:1, 공동생활가정은 2.5:1 배치

※ 노인요양시설은 유니트별로 장기요양청구이력 3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를 1인 이상 필수 배치해야 하며, 유니트 근무 요양보호사는 유니트별 전임 배치 필요(다만, 야간에 한하여 예외적 공동 활용가능)

< 요양보호사 야간 공동 활용 가능 범위 >

구분	공동 활용 가능 범위
1개 유니트 + 일반실	야간에 한하여 일반실 요양보호사의 유니트 근무 지원 가능 (단, 유니트 인력은 일반실 근무 지원 불가)
2개 이상 유니트	야간에 한하여 동일 층 2개 이상 유니트가 있는 경우, 동일 층 유니트간 인력 공동 활용 가능
2개 이상 유니트 + 일반실	

- (필수이수교육) 사업 개시 일까지 유니트 근무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함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미이수 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비용 지급 불가(미지급)

- (요양보호사 퇴사 특례*) 유니트 근무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러운 퇴사 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채용을 위해 90일간 일반 요양보호사 근무 허용

* 기관은 특례 적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채용노력'(채용공고 및 면접 등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인활동)을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퇴사 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선정기관에 대해 별도안내)

3. 운영비용

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수가 + 프로그램 지원비 + 인센티브

① (유니트케어 수가) 입소자 등급 및 요양보호사 배치 등 반영해 수가 산정

(‘26.7.1.~’27.6.30., 단위: 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유니트케어	일반	유니트케어
1	93,070	99,830	74,590	90,320
2	86,340	92,620	69,210	83,810
3	81,540	87,450	63,800	77,250

* 1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 침실료(비급여) 책정은 해당 기관 운영에 따름

** 유니트케어 수가 중 일반실 급여비용은 현행 청구절차에 따르며, 수가차액은 별도 수기 청구

② (프로그램 지원비) 월 2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 유니트당 40만원 지급

- 월 2회 중 월 1회 이상은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외부활동 프로그램: 시설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내·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유니트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과 중복수급 불가

- 프로그램 지원비 지급을 위한 활동 근거자료 별도 제출 필요

※ 입소자 현원 전체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불참 사유 관련 증빙자료 첨부

③ (인센티브) 유니트 개수에 따라 차등 지급(운영 유니트 1개당 월 40만원 추가)

- 환경개선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정액 지급해야 함

*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며,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단, 인건비 지출 비율 제외)

< 노인요양시설 유니트 개수별 인센티브 >

(단위: 원)

유니트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인센티브 (종사자 인센티브 포함)	1,350,000	1,750,000	2,150,000	2,550,000	2,950,000

④ (본인부담금) 입소시설 1일당 급여비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시설급여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납부

4. 공모안내

- **(공모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9인의 정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접수종료일 기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 불가
- 유닛별 8~12인의 정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노인요양시설
 - * 복수 유닛 운영 시에도 각 유닛 정원 범위(8~12인) 충족 시 운영 가능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나형) 및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해당 사업 정원을 제외한 잔여 정원에 한하여 유닛케어 시범사업 신청 가능
(동일 정원에 대하여 유닛케어와 치매전담실, 유닛케어와 타 시범사업 중복 운영 불가)
- 전담 요양보호사는 유닛 근무 전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필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30.(금)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추가공모) 3차 시범사업 추가 참여 희망 기관	① 붙임 1~9 양식 ② 유닛 해당층 시설 도면(평면도)

※ '붙임 1~9' 양식은 PDF 변환 없이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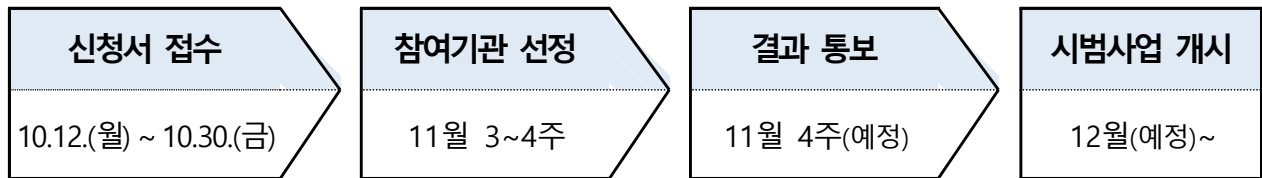
- (접수방법) 전자우편(00B6040@nhis.or.kr)

※참고: 00B6040(알파벳 B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

○ 선정기준 ... 아래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참여기관 선정

- (인력) 요양보호사 배치 현황, 치매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 (시설) 시설기준 준수(침실, 공용거실 면적 등) 여부 및 시설 생활환경 등
 - (기타) 최근 시설급여 평가결과, 타 시범사업 참여현황, 행정처분내역 등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공모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참여기관 선정 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통보(전자우편)**하며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시행 이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 033-736-1915~1917)
- ※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 공모 관련 문의는 위 연락처로만 문의 가능

- (붙임)** 1.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참여 신청서(붙임 1) 1부.
 2.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종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3.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근무예정 요양보호사 현황(붙임 3) 1부.
 4. 시설내부 전경 사진 등(붙임 4~9). 끝.